

## 교육혁신센터규정

2017.11.06. 제정      2017.12.21. 일부개정      2018.08.31. 폐지

### <교육혁신센터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고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(개정 2017.12.21.)

1. 대학교육 정책 수립 및 환류
2. 대학교육 모델 수립 및 환류
3. 대학교육의 질 관리 체계 개발 및 환류
4. 대학교육과정 기본정책 수립, 분석, 환류
5. 학생역량 기반 학생지원체계 개발 및 환류
6. 비교과 교육과정 정책 수립 및 관리·환류
7. 대학교육 수요도 및 만족도 조사, 분석, 환류
8. 산업계관점 대학평가에 관한 업무
9. 기타 위호에 부수되는 업무

제3조(센터장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는 교육혁신팀을 둔다.

② 센터에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혁신정책위원회를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7.12.21.)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이 된다.(개정 2017.12.21.)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17.12.21.)

1. 대학교육정책수립에 관한 주요사항
2. 센터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별(전공, 교양, 비교과 등)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7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명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31일부터 폐지한다.